

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(‘26.8.27. ~ ‘26.10.6.)

- ✓ 「신용협동조합법」 개정(‘26.4월)에 따라 설립을 준비중인 **신협자산관리회사**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‘**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**’ 지위를 부여

금융위원회는 「신용협동조합법」 개정(‘26.4.21. 공포, ‘26.10.22. 시행)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**신협자산관리회사**가 부실채권 매입·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(‘26.8.27일~‘26.10.6일, 41일간).

현행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,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*에게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(법 제9조의4제3항, 시행령 제6조의4, 감독규정 제12조제3항).

*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‘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+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(공공기관,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)’으로 규정

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**신협자산관리회사**도 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상 **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**으로 **추가**하는 것이며,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금번 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 개정안은 개정 「신용협동조합법」의 시행일인 ‘26.10.22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.

〈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〉

- **예고기간** : 2026.8.27일(목) ~ 2026.10.6일(화), (41일)
 -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**의견서**를 아래의 제출처로 **제출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
 - 전자우편 : parkms165289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639
- ※ **개정안 전문(全文)**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> 정책마당 > 법령정보
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장代	오유정	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록	(02-2100-2513)

